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체육진흥협의회 협의 범위 확대 등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43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역체육진흥협의회 협의사항 명시	2
2. 조례 위임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11. 20.
3. 회 부 일: 2025.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무관심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실무자 참석 등 회의 개최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운영에 그치거나,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지역체육정책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거버넌스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개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Ⅲ. 검토의견

1. 지역체육진흥협의회 협의사항 명시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지역체육진흥협회의 협의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u>지방자치단체의</u>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 - 계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직장 체육 진흥 시책,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과 청소년의 체육 진흥 시책, ----- -----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지역체육진흥협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¹⁾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

1)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협의회임.

현행법은 지역체육진흥협회의 협의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 수립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동 법에 따라 제정된 협의회 기능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기능 규정 사례]

구분	조례명	관련 규정
시도 조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3. 체육복지 및 인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강원특별 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5조(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국제체육교류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체육대회 개최지 선정, 대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도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 및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 1. 체육진흥 계획 수립 2.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 발전 3.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해체 및 관리 위탁 4.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지원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 1.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3. 도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3의2. 스포츠복지 및 체육인 인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군구 조례	강화군 체육진흥 조례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강화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읍·면에는 체육진흥후원회를 두고, 군에는 강화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대문구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협의·자문한다. 1. 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원시 체육진흥 조례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 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수원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항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고 있고 세부적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운영되지 않거나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등 지역 체육 진흥 시책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는 직장 체육 진흥 시책²⁾, 노인과 청소년의 체육 진흥 시책³⁾을 지역

체육진흥협회의 협의사항에 추가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협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협의회의 개최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립 의무가 있는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논의하도록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 2)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례 위임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지역체육진흥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지역체육진흥협회) ② 협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제5조(지역체육진흥협회) ② ----- -----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u> ----- -----.

현행법은 지역체육진흥협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 구성을 제외한 그밖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체육진흥협회의 구성, 위원 임기, 직무, 회의 개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규정 사례]

구분	조례명	관련 규정 (예시)
시도 체육회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2.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3.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 4.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등의 임직원 7.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장애인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임기) ①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3.>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도지사,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6. 3.)

	관한 조례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1. 6. 3.)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체육회장, 도 체육업무 담당 국장, 전라남도교육청 체육 업무 담당 국장,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개정 2021. 6. 3.)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체육 관련 기관 및 전남체육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은 각 조례별로 상이한 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정기회 개최 주기 등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에 명시함으로써,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75